

1. 안 건 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11년 11월 17일
-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- 2011년 11월 22일

4. 근거법령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동 조례안은 종전의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2010. 7. 1일 법률 제9887호로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관련 조례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여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임

< 검토의견 >

- 동 조례안은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으로 법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」 제명을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」로 개정하고, 조문 중 “재래시장”이라는 용어를 “전통시장”으로 용어를 전부 변경하며,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알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서, 관련 법령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」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